

제 1 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(단체명) 미상 귀하

주소: 미상

2022년 2월 11일, 제2022-18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(건축물, 장애물 등)을 2022년 3월 14일까지 철거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,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영동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2년 4월 18일 ~ 4월19일	건설교통과	행정6급	강희찬	추후계산

2022년 4월 1일

